

- 일본사례연구 -

일본의 보도사례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는 최근 일부언론인들에 의해 제창되어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익명보도주의를 연구하고 있는 「인권과 보도·연락회」라는 모임에서 마련한(입안자 산구정기) 「익명보도주의하에서의 현명기준시론」을 근거로 이 「연락회」에 참가하고 있는 전국각지의 현역기자 11 명이 공동토의를 거친 후 분담 집필한 것이다.

실명보준기준시안

(1) 기본적 관점

어떠한 경우에 실명 보도할 것인가. 출발점은 되풀이되지만 국민의 「알 권리」이다. 즉 뉴스의 대상이 되는 조직이나 개인의 이름 그 자체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 운영상황이나 장래의 정책결정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필요불가결한 정보인가 아딘가에 문제가 있다. 이 경우의 국정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걸친 국가의 정책결정인 동시에 시민의 신탁에 의한다는 의미에서 지방공공단체(도도부연, 시정촌)의 정책결정까지도 포함한다.

그러나 「국정에 관한 정보」는 직접적인 국정·도도부현시정촌정의 담당자인 정치인, 공무원의 행동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공」, 「공익」에 관한 정보도 또한 「알 권리」의 대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공공」적 입장에 있는 조직, 개인의 명칭도 그것이 「공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것들을 일괄해서 실명보도기준을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시민이 민주적인 자치를 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인가 아닌가」(평천종신 명고옥대학 교수)가 우선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2) 실명보도의 대상-「공인」

요미우리신문의 전택 맹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인>은 법률용어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는 사실, 혹은 보도하는 것이 공익의 목적에 맞는 고려한 대상의 인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미에서의 공인이라는 사고방식을 적용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러한 사고방식은 공인을 단순히 정치인이나 공무원에 국한하지 않고 공공적 입장에 있는 사람까지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1)의 기본적 관점과 일치 한다.

(1)의 기본적 관점에 입각해서 실명보도의 대상으로서의 「공인」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예시해 본다(조직도 포함).

직접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입장에 있는 존재=국가·도도부현·시아촌정담당자와 이들을 보좌하는 공무원(행정권력),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의원(입법권력), 경찰관, 검찰관, 판사, 그밖에 해상보안청, 국세청, 후생성 마약취체관등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사법권력), 자위대

그 행동이 공공의 이해 공익과 관련, 국가의 정책결정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존재=기업, 재계단체, 업계단체, 정당, 노동조합, 학술·문화·의료(의사회, 공적 대병원)·법조관계 등의 각종단체, 교육기관, 교육단체(학교, 교육위원회 등), 매스컴, 종교단체와 그 대표적 간부, 임원.

(3) 실명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건

익명보도주의하에서 보도기관은 어떠한 문제에 역점을 두어 취재하고 보도할 것인가. 실명대상이 되는 사건, 문제의 기준은 이른바 뉴스의 가치판단기준이기도 하다. 여기서도 역시 「공인」의 분류에 준한 사건의 분류를 해두는 편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뒤에 예시하는 모든 것을 바로 실명으로 보도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지표로 삼아 개개의 케이스에 대해 보도기관이 신중하게 검토, 판단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유형 1> ① 권력을 행사하는 입장의 A 공인이 그 권력을 남용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범하는 권력범죄(권력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의 침해, 헌법을 비롯한 제법에 반하는 권력행사, 공적 기관으로서의 의무의 의도적 방기, 해만 등) ② A 공인이 그 공적 입장을 이용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범죄(수륵, 공금유용, 공문서 위조 등), ③ A 공인에 의한 선거법 위반(후보자도 포함),

<유형 2> 법률상으로는 죄로 다스려지지 않았더라도 공인으로서의 적성에 의심을 갖게 할만한 문제를 내포한 행위(발각시에 시효가 된 <유형 1>의 사건, 외국에 도박행위, 매춘관여 등)

<유형 3> B 공인이 공공적인 입장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익에 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와 범죄(증축, 탈세, 배임, 횡령, 담합, 사기상법, 무기수출, 공해, 노동재해 등 기업에 의한 범죄, 허위, 인체실험, 난진난료등 의료에 관련된 범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 부정입시등 교육에 관련된 범죄, 공공적 복지·교육시설에서의 포력, 허위행위 등)

(4) 실명보도에 있어서의 취재, 보도자세

① 실명으로 보도하는 경우 직함과 경칭을 붙일 것이며, 전체적인 표현도 감정적으로 「나쁜 놈」이라고 단정하여 주관적 형용사로 비판하는 방식은 지양, 끝까지 냉정하게 사실경과,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것.

② 온갖 수단을 통해 실명으로 보도되는 사람의 주장과 생각을 취재하여 게재하도록 노력할 것.

③ 보도내용에 사실오인이 있음이 확실할 때에는 오인의 원인을 조사함과 함께 즉각 정정문을 크게 게재하고 사죄할 것.

(5) 일반범죄, 사고, 자살보도 등에서의 익명보도의 유의점

익명보도주의 아래에서는 일반범죄의 피의자, 피고인은 익명으로 하는 것이 대원칙이지만, 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관계자의 이름도 인권과 프라이버시존중(알리고 싶지 않은 권리)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이름이 보도되면 본인, 가족들에게 불명예나 부담을 주기도 하고 장난전화등 뜻밖의 괴로움이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실명보도주의 아래에서는 이러한 보도피해가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다음에 익명보도에서의 사건·사고보도의 주요한 유의점을 지적해보려고 하는데, 이 가운데에는 현재의 실명보도주의하에서도 가능한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익명보도주의로 나가는 과정으로서 당장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도해 보려고 한다.

① 사건·사고의 피해자

사건 사고의 보도내용으로서 불가결한 요소라고 판단되는 경우(예를 들면 공인이나 유명인이 피해자이고 그 자체가 큰 뉴스가 되는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도 원칙적으로는 익명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실명보도하는 경우는 본인이나 가족의 의향을 듣고 그 의지를 존중한다(가족들의 의향등은 통신사등에 의찰 대표취재가 바람직하다). 또 항공기사고, 대규모화재 등에서 피해자의 가족, 친지 등으로부터 이름을 알고 싶다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각 보통기관이 입수한 정보를 개별적으로 알려준다. 그리고 각 미디어를 통해 문의처를 반복해서 알려준다.

② 자살, 동반 자살

그 동기나 영향에 사회적 의미, 보도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케이스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보도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만일 보도하는 경우라도 익명으로 한다. 또한 공인이나 유명인의 경우에는 정치적 사건과의 관계라든가 그 「부재의 영향」을 받아 실명으로 전하는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그러한 때에도 표현에 주의하여 사자의 명예, 유족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배려가 필요하다.

③ 관계자의 이름

사건·사고의 발생 당초에는 피의자라고는 생각할 수 없고 단지 관계자로서 실명이 게재된 경우에도 수사, 조사의 진전과정에서 형사책임이 추궁될 가능성이 있게 된 경우에도 즉각 익명으로 바꾼다.

④ 민사소송, 고소, 고발

이름의 취급은 실명보도기준에 따라 판단하되 원칙적으로는 일반시민간의 소송은 익명으로 한다.

⑤ 미담, 해피 뉴스

실명으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문제는 본인의 의지에 따른다. 또 본인 가족이 승락한 때에도 보도의 영향을 배려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익명으로 취급한다.

⑥ 피의자, 피고인의 요청

피의자가 억울한 누명을 호소하여 알리바이증인을 찾는 일등을 위해 스스로 요청할 경우에는 일반범죄에 있어서도 그 호소내용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예외적으로 실명보도를 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변호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각보도기관의 책임 아래 신중하게 판단한다.

⑦ 익명보도에서의 표기

익명보도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그 개인이 어디에 사는 누구라는 것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하는데 있다. 현재의 보도에서는 소년사건이나 정신 장애자의 사건에서 익명으로 하는

경우에도 단지 본인의 이름을 가명으로 할 뿐 가족이나 관계자의 이름을 그대로 내는 등 부주의한 케이스가 많이 눈에 띄이는데, 익명보도주의하에서는 「어떻게 모르도록 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기사, 뉴스전체에 눈을 돌린다. 그 가운데서 뉴스와의 관련으로 보아 직업이나 연령이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경우 이외에는 주소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숨긴다(시, 군단위의 장소의 특징은 케이스에 따라 다르다).

즉 영에서 출발하여 최저한의 필요한 요소로 좁혀서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면 「30 대의 남성」 혹은 더 좁혀서 단지 「피의자」라고만 쓰는 케이스도 있다 이러한 표기방법은 피해자, 자살, 소송 등의 익명보도에도 그대로 준용한다. (다음의 케이스 스터디에서 「, 」만의 ○○은 실제의 보도에서는 실명으로 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사례 1> 오직의혹에 대한 보도

사실개요

북강연도노공사가 건설한 북강시·천신의 구역청자리 지하주차장을 둘러싼 오직사건과 관련하여 오전팔이 부지사와 여당인 사회당 소속의 현의원 한사람이 북강현경으로부터 각각 4 일간에 걸친 사정청취를 받았다. 이 두사람의 의혹은 지하주차장 공사의 입찰등에서 편의를 제공한 사례로서 공사는 청부맡은 건설회사인 오춘조의 간부로부터 부지사가 800 만엔, 현의원이 50 만엔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각 지사는 현금수수사실을 포함한-의혹을 전면 부정했다 현의원도 수수의 사실은 인정했으나 「의례적인 범위내」라고 의혹을 부정했다. 또한 현경찰도 현금수수의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시기는 부지사가 출납장시대때의 일로서 수회사건의 구성요건의 하나인 직무권한의 입증이 어려워 체포, 송청등 형사사건으로서의 주체는 보류하기로 했다.

주차장 건설은 전노조를 중심으로 한 4 개의 공동기업체가 15 억 2 천만엔으로 수주, 1986 년 4

월에 문을 열었다. 그런데 개업 직후 도로공사의 전무이사가 하청업자로부터 하청지명에 편의를 제공한 사례로서 500 만엔을 받은 사실이 발각되어 경찰이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공사의 총무부장도 오춘조로부터 50 만엔을 받았다는 혐의로 오춘조의 전무등 간부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또한 오춘조가 다른 자치단체의 공사에서도 금품을 뿌렸다는 사실이 드러나 5 월에 들어 북강현 적지정의 정장(한국의 동장에 해당됨)등이 체포되었다.

부지사등의 의혹은 이 수사에서 체포된 오촌조 간부들의 진술등으로 밝혀졌는데, 경찰이 서류송청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끝낸 것은 석연찮은 뒷맛을 남겼다. 야당이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현의회는 오전지사에 대해 부지사의 해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또한 사건의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보였던 공사의 총무부장이 자살하기도 해 부지사는 7월 18일 사임했다

보도내용

오전 지사는 1983년 4월의 지사선거에서 4기 16년간에 걸쳐 지속돼 온 비정 광 보수현정을 넘어뜨리고 당선되었다. 부지사는 오전 지사의 측근으로서 비서실장, 출납장을 거쳐 선배, 동료들을 제치고 발탁된 행정면에 있어서의 중추적 존재. 또한 현의원도 사회당현의원단원의 간사장으로서는 절대다수의 야당상대의 의회대책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 이 두사람에 대한 의혹은 오전체제를 뿌리채 흔들어 놓을 만한 사태였기 때문에 현민들의 주목을 집중시켰다.

부지사의 사정청취는 임의로 한다는 점도 있어 5월 24일 아침부터 비밀리에 시작되었으나,

동일 석간에는 「부지사로부터 사정유취」라는 보도가 있었다. 임의조사임에도 각지에서는 실명으로 보도. 25일 이후에는 ① 「800만엔, 부지사가요구」, 「타사도 부지사에 현금」 등 수사의 진전등을 중심으로 한 수사측의 움직임, ② 사정청취를 끝내고 돌아가는 부지사의 표정, 코멘트 등을 전하는 부지사쪽의 움직임 등을 중심으로 연일 화려한 보도경쟁이 벌어졌다. 사람들의 눈을 피한 참고인 청취라기 보다는 체포전야와 같은 보도방식이 있다. 입건보류에 대해서는 최후의 사정청취 다음날에 보도한 사로부터 부지사사임 후에 쓴 사까지 그 시기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일부의 신문이 보수계 현의원에게도 현금이 주어졌다는 의혹을 실명으로 보도했으나 이 현 의원은 경찰의 사정청취를 받지 않았다.

한편 일련의 오직사건의 체포자 전원이 실명으로 보도되었다. 특히 공사의 살림을 실질적으로 꾸려온 전무이사는 업자와의 유착관계가 소상하게 보도되었다. 자택의 사진도 「호화스러운 저택」이란 설명이 붙여져 게재되었다.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익명보도하에 있어서의 실명보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부지사, 현의원은 임의조사타고는 하나

당연히 실명으로 할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그 부정의 내용은 현민앞에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자택의 주소, 사업보도는 불필요.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의혹의 내용이 대부분 경찰에 의해 새어나왔기 때문에 의혹이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현경의 수사를 믿는다는 것을 전제로 보도되었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사건보도를 둘러싸고 때때로 지적되는 수사기관 일변도의 취재의혹을 벗어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임의수사였기 때문에 부지사 쪽의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었다. 대립하는 당사자의 말은 공정하게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현금을 받았다고 단정하여 「강력하게 부인」 등의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사건의 배경으로서 「업계의 체질이 있다」 등의 표현도 사용되는데 구체적인 사실과 실체를 잡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촌조로부터는 또 다른 수명의 연의원에게 현금이 주어졌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들 현의원을 밝혀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례 2> 국회의원이 수회죄에 관현된 경우

사실개요

일본연사공업연합회에 의한 정·관계오직은 1985년 9월 동연합회가 11억여만엔외 공금을 유용한 경리과장(29)을 동경지검에 고소한 것이 단서가 되었다. 동년 10월 23일 국회에서는 소전효리사장등이 동연합회 자금을 유용하여 주매매, 약 50명의 정치인에 대한 현금, 통상성관료 등과 교제한 사실 등이 문제화되었다. 12월 3일에는 동경 경검이 횡령혐의로 과장을 체포 1986년 2월 13일 동연합회가 나라의 융장금 4억엔을 사취한 혐의로 소전 이사장, 정상수오 전전무 등 4명이 체포되었다. 3월 26일 감독관청인 통산성의 고택은행 입지공해국 공업재배치과장과 동성의 중소기업청 조직과 조합계장이 수회, 동연합회의 상무이사등이 증회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리고 1986년 4월 16일 동경지검은 횡수문웅의원을 수탁수배혐의로 수사하는 한편 의원회관 등을 수색, 10년만의 정관오직으로 발전했다. 또 4월 25일 동지검은 도촌 의원의

개인비서 2명이 증거인멸의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며칠 후 불기소되었다. 5월 1일 도춘 의원이 단순수회죄, 황수 의원이 수탁수회죄로 기소되었다.

양씨의 기소사실은 황수씨가 소전씨등의 청탁을 받아 동연합회에 유리한 국회질문을 하기로 하고 뇌물을 받았으며, 도춘씨는 그 질문을 중개하는 한편 동연합회에 유리한 답변을 하도록 통산성 관료에게 작용한 사찰금으로 500 만엔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은 구조오직의 전형이다. 동연합회는 중소기업단체법에 근거한 상공조합으로 공적 성격이 강하다. 불황으로 고통을 받는 영세업자들을 위한 나라의 자금에 수많은 정치인 관료가 관련되어 사회적 영향도 극히 크다.

특히 양의원 외의 약 50 명의 정치인이 위법, 부당한 헌금을 받았다. 5 억엔에 가까운 뒷거래된 돈의 행방은 끝내 해명되지 않은 채 끝났다.

7 월의 선거에서 중증근파가 같은 파벌의 도춘씨의 입후보를 단념시켜 연사공업연합회사건을 낳게 한 정치구조는 전혀 선거의 쟁점으로는 되지 않았다.

보도내용

이 사건의 피의자 13 명은 전원 실명 보도되었다. 얼굴사진은 두 의원, 소전 이사장, 고택 과장의 것이 많이 게재되었다. 경리과장의 이름, 얼굴사진은 사건의 후반에도 나왔다. 경리과장이 유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자금의 행선처로서 과장이 경영하는 기획회사에 관계하는 카피라이터 등의 이름이 보도되었다. 주소는 양의원의 것은 게재되지 않았으나 도춘 의원의 2 명의 개인비서는 체포 당시 번지까지 상세하게 보도되었다. 일부 신문은 학력, 가족사항까지도 취급했다.

경칭면에서는 「약한 입장」에 대해 인색했다. 양의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이 있었고 「오늘 기소」라고 쓰면서도 「도춘 의원」으로 경칭이 붙었다. 그러나 도춘씨의 비서는 두 사람 모두 이름 밑에 경칭이 없었다.

황수 의원의 이름은 갑자기 부상한 것 같으나 도춘 의원의 경우는 1985년 10 월부터 헌금처로서 이름이 나와 있었다. 특히 황수 의원에 대한 조사가 표면화된 뒤에는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수사가 시작되기까지 전 신문이 「A 유력의원」, 「자민당 섬유족의원」 등으로 철저히 선거구를 포함하여 이름을 숨겼다.

또 이 사건에서는 1986년 2월 동연합회로부터 정치자금, 선거헌금을 받은 정치인의 이름이 명백히 드러났다. 매스컴은 동연합회의 30주년기념파티의 초대리스트 16명의 정치인을 파악하고 있었다.

마이니치신문이 2월 18일자 조간에서 16명 전원에게 동연합회와의 관계를 질문한 결과를 일람표로 만들어 보도했다. 이 가운데 9명은 교제를 인정했으나 이 9명을 포함하여 전원의 이름이 숨겨져 있었다.

검찰의 행동개시전의 신중함에 비해 피의자로 된 뒤에는 일방적으로 「나쁜놈」으로 몰아붙이는 감정적 보도가 많았다. 「태연하게 급목판역으로 향하고 있는 횡수 의원」이라는 사진설명. 본인의 코멘트소개에서도 「잘난 체한다」,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없이」 등의 형용사가 많았다.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이름을 밝혀야 할 사람은 두 의원, 소전 이사장, 정상 전무, 통산성 과장이다. 특히 중앙관청의 관리직에 있는 사람은 거대한 권한을 갖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항변의 기회도 있다. 동연합회는 공적 성격은 강하나 경영권이 없는 경리 과장은 익명으로 하고 싶다. 더구나 그의 자금유용은 정·관계공작을 위해 뒷거래되는 돈을 개인의 유흥비, 회사경영에 사용한 것. 따라서 카피라이터등의 이름은 당연히 숨겨져야 한다. 또한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않은 개인 비서의 이름을 밝힐 필요는 인정될 수 없다.

이름을 보도하는 경우라도 주소(의원의 선거구는 쓴다)라든가 사건의 핵심과는 관계가 없는 경력 등은 쓰지 않는다. 체포, 가택수색당했다고 해서 용의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격에 대한 공격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냉정하게 본인 주장을 듣고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이다. 실명주의의 나쁜 습관인 악인으로 단정 짓는 보도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정치인들이 위법, 부당한 일로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은 시민의 민주적 자치의 실현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피의사실의 진위는 신중하게 취재하여 보도해야한다.

<사례 3>사적 행위와 공적 행위의 구별-현지사애인 "의혹"

사실개요

애완현의 백석춘수명사가 「애인」인 여성집으로 공용차를 사용하여 오가고 했다는 사실이 표면화된 것은 1985년 3월 사진주간지에서 보도한 것이 발단이였다. 현직원이 운전하는 공용차로 오가고 했다는 사실 외에도 그 여성이 살고 있는 집이 지사개인명의로 되어 있었고 여성이 현지정업자의 감사역인데다가 동거의 언니가 지사와 관계가 깊은 현신연의 비서라는 더없이 지사의 공적 부분과 관련된 문제가 포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지사는 사진주간지가 발매된 이틀 후에 기자회견을 가졌다. 30년 이래의 교제를 인정했으나 애인관계는 부정, 그러나 지사개인명의로의 주택이나 여성이 각지정업자의 역원이라는 사실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넘어갔다. 그 후 현의회 등에서도 이 사건은 일체 다루어지지 않았다.

보도내용

사색주간지는 사건의 당사자인 지사와 여성을 실명으로 보도하고 사진까지 게재했다. 지사의 사진은 한 페이지의 5분의 4 크기로 실었는데, 그 여성집의 문을 나서는 장면이였다. 뒷편에는 관계자의 한사람으로 생각되는 여성의 모습도 있었다. 당사자인 여성의 얼굴사진은 다른 페이지의 기사 속에 게재했다. 주소는 표기하지 않았으나 주소를 알 수 있도록 극히 여성을 경멸하는 호칭을 명기했다. 여성의 출신성분과 과거, 지사와의 관계도 상세하게 보도했다. 이에 대해 지사의 코멘트는 「이것은 음모다」라는 한마디뿐이였다. 여성의 변명은 없었다. 이밖에 현비서실장과 야당·사회당현회원의 담화가 실명으로 보도되였다.

현청에 기자클럽을 갖고 있는 매스컴은 아사히, 산케이, 일간신애완의 3지만이 모두 3회에 걸쳐 취급했다. 3지 모두 기자회견에서의 「30년 이래의 교제관계이지만 신경통의 땀질을 받아왔을 뿐인사이」, 「평소에는 택시를 타고 다니다가 그날은 어저다가 공용차를 사용했다. 공용차의 사용(사용에)이 허용되는 범위내이다」, 「(주간지에 보도된 것은) 지사로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법원에 제소할 뜻은 없다」는 지사의 변명을 일제히 보도. 또한 3씨 모두 지사만을 실명으로 했다. 여성의 주소, 이름, 지사와의 관계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밖에 사진주간지의 각내에서의 판매상황과 현민의 반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러나 여성이 현의 지정업자의 감사역이였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 지사의 사상성이나 정치자세를 추궁하는 기사는 전혀 없었다.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지사의 실명보도는 당연하다. 현장사건을 쓸 때에는 사건의 본질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신중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비서실장이나 현의원은 그 직이 권력기관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명은 당연하다. 그러나 여성의 실명이나 얼굴사진은 논외이다. 분명히 여성도 사건당사자의 한 사람이지만 실명이나 얼굴사진이 지사의 해정자세나 사상성을 추궁함에 있어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다. 여성이 현지정업자의 역원이라는 것과 지사개인명의로의 주택에 살고 있다는 의혹은 지사의 공권권이나 정치사상과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뉴스로서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여성의 가족상황이나 지사와 친숙하게 지내게된 계기 등은 사적 부분이므로 필요가 없다.

<사례 4> 프라이버시는 보도하지 않는다 -현직재판관의 불상사-

사실개요

984년 7월 전수상 전종각영 피고등의 록히드재판 「환홍루트」의 항소심을 담당하던 동경고법형사 9부의 좌부석재판관인 판사(51)가 동경·입중주의 서점에서 중국당대의 한시집과 일 본사관계의 책 2 권(3,800 엔상당)을 훔치려다 점원에게 발각되었는데, 신분, 이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 통보되었다.

대법원은 분한재판으로 이 판사를 계고처분, 본인으로부터의 사직원을 수리하여 의원퇴직시켰다. 서류송청을 받은 동경지검은 ① 피해금액이 적다. ② 본인이 사실관계를 인정, 반성도 하고 있다 ③ 분한처분을 받는등 이미 사회적제재를 받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기소유예)하여 형사책임을 묻지 않았다.

한편 1986년 1월 단신으로 부임중이던 대판고법 직무대행판사(40)가 교제 중이던 주부(46)와 궁기발의 휘리선상에서 바다로 투신, 동반 자살한 것으로 보여진다. 판사는 정초부터 무단결근, 주부도 남편과 아이들을 남겨두고 가출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재판관분한법에 근거하여 이 판사의 면관신청수속을 취했다.

보도내용

책을 훔친 사건은 이따금 그 판사의 담당재판이 주목되어 온 록히드사건 전중항소심이었기 때문에 얼굴사진까지 곁들여 크게 실명 보도되었다.

각지는 이 판사의 약력을 소개하면서 동경고법, 대법원 당국의 이야기로 하여 「전립선의 병세가 악화, 방중에 다섯 여섯 번의 화장실 출입으로 수면부족상태가 계속 되었다. 마가 끼어 책을 훔치는 일까지 저지르고 말았다」, 「감기로 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제를 복용한 것이 몸의 컨디션을 망가 뜨렸다」, 「잠을 자지못한 날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초조와 불안 속에 훔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등 판사 본인의 말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판관으로서의 품위를 더럽힌 행위」라는 법원관계자의 소감도 소개했다.

그 후 이 판사가 신사지법 장강지부장때 판결문 속에 집행유예기간을 두가지로 쓰는 등 실수를 범해 그 피고인으로부터 무죄를 구하는 서명부가 대법원에 제출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한편 동반자살사건은 「F.F 현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회상황속에서 비교적 크게 취급된 것이 눈에 띄었다. 대부분의 신문이 얼굴사진과 함께 그 판사에 관해 실명보도했다. 학력, 경력도 상세하게 소개되었다. 주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실명을 숨겼으나 실명과 상세한 주소를 게재한 신문도 있었다.

이 판사는 처를 동경에 남겨두고 대판에 단신 부임중이었으며, 강주근무때에 이 주부와 알게 되어 교제를 계속해왔다. 더우기 주부가 「당신을 계속 속일 수 없다」는 글을 남편에게 남겨 놓았다는 사실도 보도되고 있어 「불륜관계」 청산을 위한 투신자살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두 사건 모두 재판관이 그 지위를 악용하여 행한 권력범죄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프라이빗한 차원의 사건이다. 보도하느냐 마느냐, 그 선택의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책을 훔치려던 사건은 증명으로 보도해야한다. 책을 훔친 행위는 훔치는 행위 중에서도 경미한 죄라고 할 수 있으며, 평소에는 거의 보도되는 일이 없다. 다만 죄를 범한 사람을 심판하는 입장에 있는 재판관이 순간적으로 마음을 잘못 먹은 데서 온 일이라고는 하지만 법률에 저촉되는 죄를 범했으므로 사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보도대상이 되는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재판관도 무엇인가의 실수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의미에서도 필요한 뉴스라고 하겠다.

그러나 재판관의 개인 이름은 필요하지 않다. 매스컴에 알려지지 않았더라면 현직에 머물게

되고, 보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관이 대법원으로부터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문제다. 직명, 연령만으로 그치고 상세한 학력이나 경력도 쓰지 않는 것이 옳다.

한편 동반자살사건은 보도를 보류하는 것이 마땅했다. 당사자중 한사람이 「재판관」이라는 점을 빼면 단순한 애정동반자살에 불과하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것도 없다. 남겨진 처, 남편, 아이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아무리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이런 종류의 동반자살의 경우 판사의 이름은 게재하지 않는 「용기」를 갖고 싶다. 대판고법의 판사가 무단결근하고 있다는 사실은 익명으로 친했어야만 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부석까지도 포함해서 재판관의 이름은 실명으로 해야 한다. 하급심의 판결을 인용할 때에도 실명으로 해야 한다. 최근 수년간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재심-무죄판결, 즉 면죄사건은 무서울 정도의 「권력범죄」이다. 가해측의 한쪽 당사자인 오판재판관의 책임은 중대하다.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실명보도해야만 한다. 비록 10년, 20년전에 담당한 사건이라도 그 판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소멸될 수가 없다. 오판이 죄 없는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얼마나 큰 상처를 입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되풀이해서 보도하고 싶고 왜 죄없는 사람을 병인으로 만들었는지 그 오판의 구조를 구명하는 의미에서도 왜 잘못되었는지를 당시의 재판관에게서 들어 그 책임을 분명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사례 5> 직무상 범죄는 실명-재판부의 직권남용-

사실개요

소창간역재판소(북구주시)의 판사(당시, 이하동)가 자신이 담당한 절도사건의 여성피고와 직권을 이용하여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문이 폭로했다. 북강지검의 수사결과 ① 1980년 7월 11일 오후 8시 40분경 여성 피고택에 전화를 걸어 「피고변상일로 할 말이 있다」고 국철소창역 근처의 다방으로 불러내 약 30분간 동석시킨 것이 공무원직권남용죄로, ② 같은 날 15일 오후 7시경 여성피고를 북구주시내의 여관으로 유인, 「징역을 살고 안살고는 네가 마음먹기에 달렸다」면서 깊은 관계를 요구, 여성피고도 관대한 판결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이에 응한 것이 수회죄로 각각 추궁되었다. 1980년 12월 19일 북강지법에

기소되어 1982년 3월 17일 징역 1년의 실형판결. 1983년 9월 2일 복강고법에서 항소기각. 1985년 7월 18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확정되었다.

보도내용

재판관이 재직중의 범죄로 유죄를 받은 것은 명고옥지법판사(담당사건의 피고관계자로부터 현금 등을 받아 수회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경도지법판사보(록히드 사건수사에 얽힌 가짜 전화사건으로 경범죄법 위반이 적용되어 구류 29일)에 이어 1945년 이래 세 사람 째이다. ① 재판관의 범죄 그 자체가 극히 드문 일이다. ②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묻는다는 대의명분 ③ 간역재판소 판사의 비밀스런 정사 등이 뒤얽혀 모양이 좋은 보도테마가 되었다.

주된 등장인물은 판사와 여성피고의 두사람. 판사는 실명으로 사진과 함께 보도되었으며 여

성은 익명이었다. 다만 아사히가 특종으로 보도한 1980년 9월 6일 조간에서는, 판사는 「북각시소재, A 간역재판소 판사」로 익명. 같은 날 석간에서 뒤따라온 요미우리, 마이니치가 실명과 함께 얼굴사진을 게재. 그 후에는 모두가 실명과 사진게재. 호칭은 각지 모두가 지검의 기소전에는 「○○판사」, 사임후는 「○○전판사」라고 표기하였으나, 기소때에는 「전간역재판소 판사 ○○○○」라고 존칭을 붙이지 않았으며, 공판이 시작되면서부터는 「○○피고」로 표기되었다

여성에 대해서는 처음은 「A 자피고」등 「피고」표기 (아사히, 마이니치)와 「A 자씨」(요미우리)로 같았으나 곧 아사히, 마이니치도 「A 자씨」로 바꾸었다.

전반적으로 특징적인 것은 ① 신병구속이 없이 기소나 구형, 판결 등이 있을 때마다 본인이 취재에 응해 하고 싶은 말을 주장할 수 있었다. ② 동경최종판결만으로 보는 한 사건과 관계가 없는 사사의 기재가 적었다는 두 가지 점이다.

고장의 구주지구 신문에서는 「기자좌담회」로 하여 「어른의 상식으로는 측정될 수 없는 사람」, 「약한 마음과 후안무치가 동거」라고 인격을 「평가」했는가 하면 「재판소서기관에서 등용된 간역재판소 판사의 콤플렉스」등 멋대로의 추측으로부터 「성격, 사물에 대한 사고가 비뚤어져 있다」고 인격비난을 가한 경우도 있었다.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재판관의 직권남용, 수화-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시민의 민주적 자치실현을 위해서 알 권리의 대상이며 과거의 사례나 그밖에 재판의 공정을 위협하는 것이 없느냐는 것까지 포함해서 넓은 지면을 할애하여 보도해야 할 테마이다.

그러나 흥미본위로 「사사」나 비사에 기울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요청된다. 문제점을 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판사 본인은 실명 (호칭으로 「판사」, 「전판사」를 붙여). 여성 피고는 익명(「씨」를 붙여). 신문은 판결, 결정의 보도때 언제나 재판관의 이름을(현행처럼 재판장뿐 아니라 호석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며(체포, 수색 등 영상발부도 같다)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범했을 경우도 당연히 실명이 된다

판사의 소속법원이나 판사가 된 이후의 약력은 필요하나 출신지나 출신학교는 필요하지 않다 자택주소는 「북강시 ○○구」 (정영시 이외이면 「○○시」, 「○○정」으로 충분하다)로 할 것이며 가족구성도 불필요. 사진도 원칙적으로 공적인 장소에 한정. 그 이외는 가급적 피한다.

기소전은 물론 기소후에도 쌍방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하도록 해야 한다.

<사례 6> 미담보도와 프라이버시-다섯 쌍둥이 출산-

사실개요

1986년 5월 26일 삼중대학 의학부 부속병원에서 남자 3명, 여자 2명의 다섯 쌍둥이가 탄생했다. 출산한 것은 삼중현 사일시의 주부(27)로서 배란유발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예정 일인 7월말보다도 2개월이나 빠른 조산이 없다.

그런데 출산 후 2일이 지난 28일밤, 가벼운 호흡장애를 일으킨 네번째 아이의 용태가 악화, 뇌출혈이 원인으로 사망했다. 다른 네명의 아이는 그 후에도 순조롭게 자라 8월에는 모두 무사히 퇴원했다.

다섯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출산은 1976년 녹아도시에서 NHK 기자의 다섯 쌍둥이 이후 일곱번 이상의 사례가 있다.

배란유발제에 의한 다급아 출산은 그렇게 진기한 일은 아니나 밝은 뉴스로서 매스컴에 크게 취급되고 있다.

보도내용

「다섯 쌍둥이 곧 출산」의 사실은 5월 24일 병원측의 기자회견형식으로 공표되었다. 출산은 6월 초순에 있었고, 부부는 이름의 공표를 원하고 있지 않았으나 출산으로부터 1주일 이상 지난뒤 다섯 아이 모두가 무사하다는 것이 확실시 된 시점에서 공표하도록 병원측이 설득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름의 공표시기에 관한 각 사간 협정은 각사편집부와 의논한 뒤 4일후의 회견에서 재론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 회견전에 다섯 아이는 탄생했다. 조간 마감시간 직전이었기 때문에 서로 앞을 다투는 무질서한 취재경쟁이 벌어졌다. 병원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심야의 병원에서 TV 카메라가 돌아갔고 간호부와 다른 환자를 찾아 취재하고 돌아가는 등 병원은 큰 혼란에 빠졌다.

다음날 27일의 조간은 출산한 여성에 대해 「삼중현 북세지방의 주부(27)」, 「사일시 시내의 회사원 A씨의 처 B씨(27)」라는 익명의 형태로 보도되었으나 병원명, 담당의사에 대해서는 실명 보도되었다.

27일 아침에는 다섯 아이의 부친이 「병원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병원내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날의 석간에서 부부의 주소, 이름, 직업 등 모든 것이 밝혀졌으며 부친과 보육기안에 든 다섯 아이의 사진도 실렸다. 마이니치신문에서는 아파트의 호수와 「화학메이커사원」이라는 직업까지 밝혔다. 네 번째 아이가 사망한 후에도 실명보도는 계속되었다.

보도의 내용은 『기쁨이 가득』, 『다섯 쌍둥이 건강』, 『경축합니다 다섯 쌍둥이』 등의 제목을 비롯 부친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이야기했다」고 표현하는 등 시종 축하무드가 지속되었다. 또 『훌륭하게 키울 겁니다』, 『남편에게 생긋 웃어 보이기도』라는 제목등으로 미담조 일색이었다.

의사단의 진찰등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도되었으나, 배란유발제의 문제라든가 부부의 경제적 부담등에 대해 쓴 깊이 있는 기사는 없었다.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출산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이다. 일반시민의 출산에 관해 본인이 이름의 공표를 원하지 않는 한 익명으로 함이 마땅하다. 주소, 직업, 병원명, 담당의사도 본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신중하게 보도했으면 좋겠다. 네번째 아이가 사망했을 때 실명으로 보도한 뒤라 하더라도 부부의 의사를 타진한 후 익명으로 바꾸어 주는 배려도 필요했다.

부부의 의사는 병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스크업각사의 대표가 직접 본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병원을 통해서 하면 병원측의 의견이 들어갈 우려가 있고 의사와 환자라는 입장에서 보아 환자는 병원측의 의견이나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그때 의사의 직접확인도 부부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마스크업은 일방적으로 다섯 쌍둥이 탄생을 「축하할 일」이라고 판단, 그것을 이유로 본인이 숨기고 싶어하는 프라이버시에까지 침범하여 보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섯 쌍둥이 탄생=축하」라는 발상을 일단 버리고 배란유발제의 부작용으로서의 다태임진이나 출산의 위험성을 냉정하게 보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배란유발제에 의한 다태출산이나 체외영정아의 출산은 아이가 없는 부부들에게 낭보로 전해

질 수 있는 반면 가족의 프라이버시침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1983년 동북대 의학부 부속병원에서 탄생한 일본 최초의 체외수정아의 뉴스는 양친의 실명보도로 파문을 일으켰다. 실명보도한 마이니치신문은 그 근거의 하나로써 「불임부부의 낭보」를 들었다. 그러나 생명조작을 둘러싼 환경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수정아나 가족의 프라이버시보호가 우선 되지 않으면 안된다.

범죄보도는 물론 화제거리가 된 것이라도 실명에 의한 보도가 본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더 나아가 뜻밖의 보도피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1980년 동경 은좌에서 1억엔을 주워 거출한 남성은 실명으로 보도된 후 자택으로 짓궂은 전화와 협박장이 잇달아 「받은 1억엔을 어디에 사용했느냐」는 등 프라이버가 모조리 폭로되었다.

미담이나 낭보를 포함한 일반보도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저촉되는 경우 본인의 승락을 전제로 하여 익명 보도하는 등의 배려가 불가결할 것이다.

<사례 7> 보도주체와 객체간의 대화-무자격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사건의 보도와 개요

① 무자격 X-Ray기사의 경우

진시의 I병원에서 X-Ray기사의 면허를 갖지 않은 자동차운전기사들이 병원측의 지시로 방사선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삼중순경과 진경찰서가 1985년 9월 8일 I병원등을 진료방사선기사법 위반혐의로 수색, 운전기사들을 입건했다.

9일자 아사히신문은 운전기사들을 익명으로, I병원의 병원장을 실명으로 보도했다. 또 병원장과 인터뷰하여 「방사선기사는 어느 병원에서든 부족한 상태 (중략) 하는 수 없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다」는 담화를 게재하고 있다.

10일에 각지는 원장 이외의 관계자들까지도 모두 인명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원장의 담화는 취급하지 않았다.

이어 1986년 1월 9일 삼중현경이 원장 이하 병원관계자 7명을 서류송청하자 각지는 전원을 실명으로 보도했다. 또 피의사실은 사건원고의 통례에 따라 「조사에 의하면……」으로 시작되는 경찰발표(시준) 형식에 따르고 있다.

② 무자격간호원(담노도)의 경우

병고현 삼원군 서담정의 병원에서 간호원의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여성사무원이 약 17년간에 걸쳐 환자에게 주사를 주는 등 간호원의 행세를 해 온 사실이 밝혀져 1986년 5월 13일 병고현과 보건소 등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태조사를 했다 사무원은 위법행위가 발각된 날로부터 치료보조를 중지했다.

14일자 요미우리신문은 원장, 사무원의 쌍방을 실명으로 보도하고 「하루 50~60명의 환자가 찾아오기 때문에 3명의 정규간호원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었다」는 원장의 담화를 게재했다. 또 제 1보로부터 2일후의 지역판에서 원장과의 일문일답을 시도하여 사무원에게 의료보조를 시킨 지역의료의 사정 등에 대한 주장을 게재했다. 한편 15일자 신호신문은 사무원에 관해서는 익명으로 보도했다.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불법 의료행위는 불특정다수 주민의 생명, 건강과 직접 관련되는 문제로서 그러한 의혹이 부상한 단계에서 병원책임자가 의혹을 사실로서 긍정하든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든 총명으로 사태를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병원측이 사실관계를 부인한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입증책임은 보도한 측이 지게 되므로 보다 신중한 보도를 기대할 수 있다. 스웨덴등에서 실천되고 있는 시민적 기반을 가진 「신문평의회」, 「프레스 옴부즈맨」 등의 제 3기관의 체크 기능을 확립시키는 일도 신중한 보도를 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의료행위는 전문지식, 기술을 갖지 않은 환자에 대한, 말하자면 「준권력행위」이다. 사람들은 의사에게 생명을 맡겨놓고 있고 의사와 병원은 그러한 신뢰에 보답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법규에 엄격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위법행위의 체크는 사법기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널리 시민차원에서의 책임추궁의 회로가 준비되어 있어도 좋지 않을까. 이때 중요한 요건은 추궁받는 측의 반론의 기회를 보장하는 「피드백회로」의 준비이다.

이때 위법행위라는 단정에 근거한 「제재」를 지향하는 보도활동은 강력하게 경계해야 할 것이다. 저널리즘은 지금까지 「죄의 선고자」가 되는 데 지나치게 열심이었다고 말하면 지나친 것일까.

「사람의 생명을 아무렇게나 다루는 행위를 하고도 그게 의사인가」라고 분노하는 마음가짐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저놈이 나쁘다」고 지탄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많다.

「어떠한 원인으로 그러한 사태가 일어났는가」, 「그와 같은 불법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는 있지 않은지」 등의 의문에 대한 회답은 저널리스트가 단죄자를 검하고 있는 한 얻어낼 수가 없다.

보다 민주적 인 보도주체와 보도객체간의 대화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사례 8> 익명으로 바꾸는 시점은 언제인가-사장자택 방화사건-
사실개요

1984년 2월 8일 상오 11시경 동경도 품천구의 영화회사 사장집에서 불이 나 전소했다. 이 불로 사장집의 가정부가 소사했으며 사장의 장남(동사 상무이사)등 세사람이 얼굴등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

4일후인 12일 경시청은 화재원인을 동거중인 장남과 말다툼을 한 사장이 식당에 기름을 뿌려 방화를 한 것으로 보고 현주건조물방화의 혐의로 체포했다.

동경지검은 75일간의 감정유치로 정신 감정후 5월 18일에 기소했다. 같은 해 12월 3일 동경지방법재판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했다.

가정부는 일단 피신한 후 방에 두고 나온 손가방을 가지러 들어갔다가 연기에 질식,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 점에 대한 형사책임은 추궁되지 않았다. 사장측은 가정부의 유족에게 3,500만엔을 주었다.

판결은, 사장이 처가 병사한 1946년경부터 음주량이 늘어 알콜중독증을 원인으로 하는 억울증상태에 있었다고 한다. 이 사장은 5월 25일의 주주총회에서 사장직을 사임, N씨가 후임사장으로 취임했다.

보도내용

화재발생시점에서 사명, 사장 이름이 크게 보도되었다. 일부상장기업 사장의 자택이 전소되고 소사자까지 나왔으니 당연하다. 화재원인에 대한 사장의 설명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10일 석간부터 「○○사장 불러 청취하다」, 「두 아들과 말다툼」, 「엇갈리는 검증, 공술. 방화의 혐의도」라는 기사가 나왔다.

13일에는 『○○사장에 구속영장, 장남과 말다툼, 방화양론』, 『방화로 구속영장』이라는 제목으로 입원중인 사장에게 강포상이 발부되었다고 보도했다. 체포된 15일 석간 각지는 1면과 사회면에 『○○사장 방화로 체포 퇴진설』, 『자택에 방화 가정부를 죽게 하다』, 『술과 약의 나날 부자 심각한 단절』이라는 큰 제목으로 보도했다.

가정부 소사의 책임이 강조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연극계의 노보」, 「이대째의 고뇌」가 사건의 배경에 있다고 썼다. 본인에 대해 「사장의 지위가 불안정」, 「대낮에 주기를 띠고 회사로」, 「인간적으로 답답한 남자」,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귀인」이라고 인신공격. 더욱이 병력, 학력 외에 처와의 사별, 장남의 경영자세, 결혼문제 등의 가정사정도 상세하게 보도되었다.

「장남의 사내평판이 좋지 않다」, 「부자간의 틈은 더욱 더 깊어가기만 한다」, 「경영자로서는 부적격」, 「때때로 지각을 한다」는 등 장남의 주변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쓰고 있다.

기소의 전후에는 사장의 생활방식 등이 「속보」로서 각지에 나왔다. 「술 · 술 · 술의 나날……방화의 송죽 사장○○」 아사히신문 5월 15일 뉴스삼면경은 사장의 술의 「역사」를 세밀하게 보도. 경칭은 붙이지 않고 얼굴사진을 곁들여냈으며 결론은 「○○은 눈 깜짝할 사이에 명문기업의 사장으로서의 명성도, 사회적 지위도 잃었다」고 맺었다. 공동통신이 배신한 「앵글 84」도 『화려한 일족의 중압과 고독』이라는 제목으로 사적인 생활을 폭로했다.

판결기사는 비교적 냉정한 편이었다.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일부상장의 유명기업의 사장택의 전소는 뉴스이긴 하다. 사장명은 당연히 실명이나 그 자리에 있다가 부상을 입은 장남, 가정부는 익명으로 해야 한다

문제는 「석유스토브를 실수로 넘어뜨렸다」는 사장의 공술에 대해 경찰이 의심을 품은 후의 보도이다. 이 시점(2월 9일경)에서 익명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영화회사의 사명도 주소도 밝혀서는 안 된다. 영화회사 사장에게 방화의 혐의가 걸려 있다는 사실은 시민들에게 있어 필요한 정보가 아니다. 그 단계에서 사건은 전혀 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 후의 보도는 「동경도 품천구 에서 창사 사장택이 전소한 화재는 ……」식으로 써야만 한다. 사장의 재인적인 전역이나 장남의 경영자로서의 재능 등은 적어도 체포단계에서 떠들석하게 써서는 안 된다. 사장이 왜 방화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재판의 진행을 지켜본 뒤에 독자적인 취재로 사건의 줄거리를 보도했으면 좋겠다.

5월 25일의 사장교체는 경제계뉴스로서 「○○사장의 일신상의 사정으로」 정도로 쓰면 충분할 것이다.

자택전소때 사장의 이름이나 사명이 보도되어 이미 알려질대로 알려졌는데 익명으로 바꾸는 일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한번 실명 보도되었더라도 익명으로 해야만 한다고 판단한 시점에서 익명을 관철하는 것이 익명주의의 원칙이다.

이것은 일단 실명 보도되었더라도 미성년, 정신장애자로 판명된 단계에서 익명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례 9> 자살이 보도대상으로 되는 사례-인기가수의 자살- 사실개요

1986년 4월 8일 18세의 여성인기가수가 동경도내의 소속프로덕션 빌딩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신했다.

보도내용

전국지, 지방지의 모두가 「인기가수 ○○양 자살」이라고 실명(본명도), 얼굴사진(또는 포즈 사진)을 곁들여 사회면에 크게 보도했다(조일준톱에 4단, "마이니치 4단, 요미우리 톱 6단). 각지는 모두 자살의 순간을 생생하게 전하면서 그녀의 경력도 상세하게 소개했다. 마이니치는 첫 보도부터 「남우의 A씨(익명)에게 버림받았다는 내용의 유서가 있었다」고 보도했으며, 조일, 요미우리도 『실연고의 유서』라는 기사로 뒤를 이었다. 더우기 마이니치는 첫 보도에서 익명으로 했던 남우에 대해 다음날에는 실명예다 사진까지 넣어 「그녀의 자살과는 관계가 없다」는 본인의 「해명」과 함께 게재했다.

이러한 신문보도를 증폭하는 형태로 주간지, 사진잡지는 눈을 돌려 외면하고 싶을 정도의 현장사진을 게재하여 소문의 대상이 된 남우와의 관계를 집요하게 써댔다.

이러한 보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이들이 인기가수의 뒤를 이어 잇달아 자신했다. 그것이 또 크게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불과 2주일 동안에 20명이 넘는 소년, 소녀가 젊은 목숨을 스스로 끊어 갔다.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자살은 본래 프라이빗한 것이다. 그것이 보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로는① 가스폭발등으로 말려들어 피해자를 냈다든가 열차에 뛰어들어 사고나 운행시간의 혼란을 초래했다든가 하는 등 사회에 폐를 끼쳤다든가 영향을 주는 케이스, ② 자살자가 증수회등의 사건관련자라든가 견서나 상황으로 보아 사회적 의의가 있는 케이스, ③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 유명인(공인, 준공인)으로 그의 갑작스런 부재가 부자연, 부가해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생각되는 케이스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①, ②는 이름 그 자체가 뉴스는 아니므로 당연히 익명보도해야 할 것이다.

취급하기에 어려운 것은 ③의 케이스로 이것이 이번의 인기가수의 경우에 해당된다. 이 케이스에서는 그 부재의 이유=죽음을 전하는 것이 뉴스이므로 보도한다고 하면 실명이다. 반면 동기는 뉴스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살의 수단은 필요하지 않으며, 더욱이 정치인 등 자살사자체에 커다란 사회적 영향이 있는 케이스 이외에는 자살에 의한 죽음이라는 것도 확실하게 쓸 필요가 있는 것일까? 익명보도원리의 정신에 따르면 스웨덴과 같이 「○○○씨가 ○일 사망했다. 예기치 않은 갑작스런 죽음에 관계자들은 슬픔에 잠겨있다」고 쓰는 표현이 어울린다. 그리고 고인의 업적이나 경력, 경우에 따라서는 죽음을 슬퍼하는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 뉴스로서의 목적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만 유명인 중에서도 공인 특히 정치인 자살에 대해서는 동기 등을 파고드는 취재가 필요하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와 크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사례 10> 피해자의 이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호텔화재, 항공기사고의 경우- 사건과 보도의 개요

① 호텔화재의 경우

1986년 2월 11일 새벽 정강현·열천온천의 호텔별관이 전소, 24명의 숙박객과 종업원이 사망했다.

화재사건을 최초로 전한 것은 NHK의 새벽뉴스였다. 그 이후 민방에서도 뉴스와 TV와이드쇼를 통해 숙박객 명단등을 중계로 내보냈다. 한편 신관은 12일자 석간(휴간일때문에 12일자 조간은 쉬었음) 1면과 사회면의 태반을 할애하여 이 화재사건을 보도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각지가 모두 정경기사로 다루면서 명단을 소개했다. 특히 숙박 목적등을 한마디씩 명단에 덧붙였는가 하면 얼굴사진도 냈으며 숙박한 방의 겨냥도를 실은 사도 있었다

이 화재보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의 이름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행의 신문, 방송 각사의 기준이나 관례에서는 이러한 경우 모두 이름을 내도록 되어 있다 「행방불명이 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라는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과 같이 특히 발생 직후에는 이름이 가장 중요한 뉴스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름을 보도하는 것은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기 쉽다. 예를 들면 어디에 누구와 함께 숙박하고 있느냐는 등 가장 프라이비트한 사항인데도 화재가 있는 호텔에, 부부가 아닌 남여가 동숙했다는 사실이 널리 보도되었다. 사진주간지를 비롯 일부의 잡지는 꽤 흥미 본위로 이 사실을 전했다

② 항공기사고의 경우

1985년 8월 12일 저녁 일본항공의 점보기가 군도현 상야촌에 추락, 승객 4명이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으나 520명이 사망했다.

이 사건의 제 1 보도 방송에서 했다. 그날밤 NHK는 TV 특별프로에서 승무원과 승객의 명단을 하나하나 전했으며, 다음날인 13일 낮에는 부사TV가 생존자발견을 생중계했다. 한편 신문은 13일자 조간부터 연일 지면의 대부분을 이 사고의 보도로 메웠다. 각지 모두가 명단과 얼굴사진을 크게 취급했다. 또한 생존자의 동향은 원인규명과 함께 보도의 초점이 되어 특히 육친을 잃고 혼자 살아남은 여자중학생에 관한 기사가 마이니치와 같이 지면에 게재되었다. 이 소녀는 그 이후 잡지와 방송의 와이드쇼의 취재에 쫓기는 몸이 되었다. 일항기사고에서도 남편 몰래 일본에 온 홍콩의 한 여성의 죽음이 현지에서 게재거리가 되었는가 하면 부부가 아닌 남여가 함께 여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잡지가 게재하는 등 피해자의 이름이 밝혀져 프라이버시가 침해된 사례가 발생했다.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그러면 호텔화재나 항공기추락사고에서는 피해자의 이름을 어떻게 취급하면 될 것인가. 한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본인 또는 가족의 승낙을 받고 이름을 내는 방법이다. 승낙을 얻지 못했을 경우라든가 연락이 취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익명으로 한다. 그러나 이것은 속보성이 강조되는 방송이나 마감시간에 지배되는 신문에 있어 현실적으로 극히 어려운 주문이다 또 승낙을 얻는다 하더라도 사고로 정신이 없는 피해자나 가족의 감정을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심리적 부담이 될 것이며 승낙의 기준(누구로부터, 어느 정도)도 애매하다.

원리적으로 생각해보자. 피해자의 이름을 전하는 일은 피해자와 가족의 프라이버시나 감정을 침해할 위험성을 범하더라도 독자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결론은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이름을 정보로서 알아야만 할 사람들(가족근무회사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항공회사로부터 직접 연락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그렇게 하는 편이 느닷없이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보다는 바람직하다. 더우기 이름을 알고 싶은 관계자들을 위해서라면 문의할 곳을 되풀이하여 보도해줌으로써 그러한 요청에 충분히 부응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현재 구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이름도 원칙적으로는 익명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 라고 말할 수 있다. 공인의 경우의 취급은 자살의 경우와 같다고 하겠다. 문제는 익명으로 해서 사고의 비참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가족의 프라이버시, 감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대원칙의 범위내에서 가장 어울리는 보도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사고보도의 제일의적 사명은 사고의 원인, 배경의 해명에 있기 때문이다.

<사례 11> 「자백보도」의 문제점

사실개요

1979년 1월 22일 대판부 구총점치 밭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목이 졸려 죽은 여자의 시

체가 발견되었다. 4일후인 26일 저녁 그 여자의 내연의 남편이 근처에 사는 안면이 있는 소년 A 군(당시 18세)을 추궁했다. 해안으로 끌고 가서 매를 때리는 등 「이상한 상황하」(확정판결)에서 자백을 시켜 공범자 4명의 이름을 적은 고백메모까지 쓰게 한후 손가락을 끊어 피도장을 찍게하고 그날 밤으로 구총경찰서로 연행해갔다.

동서는 A 군을 긴급구속하고 다음날인 27일 새벽 A 군의 「자백」을 근거로 그의 친구인 B 군(당시 21세), C, D, 3 군(당시 18세)의 4명을 살인용의자로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모두 범행을 자백 했다.

대판지법 계지부에서의 공판에서는 전원이 범행을 부인했는데 B 군에게 징역 18년, 다른 4명에게는 징역 10년이 각각 선고되었다. A 군 이외의 4명은 항소. 1986년 1월 30일

대판고등법원은 「체액, 지문 등이 일치하지 않고 자백은 폭행이나 유도에 의한 혐의가 짙다」고 무죄를 선고, 확정시켰다. 복역중인 A 군은 즉각 재심을 청구했다.

보도내용

성인인 B 군은 실명으로 얼굴사진 함께 보도되었다. 미성년인 4 명은 익명보도. 무죄판결후에도 똑같이 보도. 이들 다섯 명이 체포될 때를 전후하여 이따금 대판의 삼릉은행 북도지점의 강도 인질사건이 크게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이 대판에서도 비교적 작게 취급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예에 따라 강포=막범인=사건해결이라는 단락적 기사가 눈에 띈다. 그리고 「범인을 자력으로 잡았다고 내연의 남편을 미담의 주인공으로 묘사했다. 재판에서도 최대의 쟁점의 하나인 「남편에 대한 A 군의 자백」의 임의성에 대해서도 남편의 말을 아무런 증거의 뒷받침이 없이 「A 군을 유영의 앞에 앉혔더니 와들와들 떨면서 추궁에 대해 모든 것을 고백했다」고 보도했다. 남편의 말이 경찰과 기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신문은 안심하고 진실로 믿었던 것이다. 다음은 「자백기사」의 유형이다.

한참 뒤에 ① 『여성 5명 살해매장 패악살해범이 자백』(2월 6일 요미우리 석간), ③ 『다른 여성도 살해?』(2월 6일 마이니치 석간), ③ 「여러사람을살해 공범의 두소년도 자백 지도를 그리게 하여 확인 서두르다」(2월 8일 마이니치 조간) 등 일련의 「자백기사」가 나왔다. ①은 5단 제목 ③은 사회면 톱으로 그때까지는 가장 크게 취급된 보도였다. 경찰의 공식발표가 아니고 야간취재등에 의한 비공식정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의 기사는 전문에서 「3명의 진술을 합치니까 피해여성의 수는 천주지방 일대에서 8명이나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수사본부는 진술의 중복이라든가 기억의 불확실성, 피해자가 희생한 케이스를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2명 정도는 실제로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등 기묘한 논리를 전개했다.

이러한 것들은 존재하지 않은 사건으로 유체나 피해자도 없는가 하면 기소된 적도 없다. 경찰에서조차 반신반의였다는 것은 ②에서 「(수사본부는) 거것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의 범행은 숙달되어 있었다」,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은 증발되더라도 잘 발각되지 않는다」등 끝까지 범행의 실재를 추측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들은 결국 정정이나 사과도 없다. 단정해서 쓰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독자가 받는 인상은 단정 한거나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고법의 무죄판결은 이 사건에서 가장 크게 보도되었다. 각지 모두 1 면과 사회면을 크게 차지하여 당시 성인이었던 B 군의 얼굴사진, 기자회견사진이 실명과 함께 보도되었다. 요미우리는 10 회에 걸쳐 멋진 연재를 했다.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무죄가 되니까 자백위주의 수사를 비난하는 신문은 실은 자백위주의 보도를 해왔던 것이다.

경찰로부터의 정보를 바로 양실로 간주하는 의식이 기저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연의 남편을 영웅시한 기사와 같은 뿌리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를 자백하도록 몰아치다」, 「엄하게 추궁」이라는 상용구도 「자백위주 모사의 격려」가 평상시에 언제나 행해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편 용의자의 대부분은 경찰의 대용감옥에서 엄한 취조를 받고 있으며 그 심리가 정상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것은 많은 면죄사건이 말해주고 있다. 더구나 자백내용에 관해 기자는 그 용의자와 이해가 정면으로 대립하는 또 다른 한쪽의 당사자인 경찰로부터 밖에 들을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그 「자백」을 기자가 직접 들은 것처럼 보이는 문체로 쓰는 습관이 정착하고 있다. 민사소송등 다툼이 있는 사건의 취재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행해지고 있다. 경찰이 정보조작을 하려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본래와 같은 「자백기사」는 필요치 않다. 범죄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이상 뉴스도 아니다. 유체등으로 범죄가 확인된 경우에도 단락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경찰의 공표사실=진실이라고 즉각적인 단정을 하지 말고 「○서의 ○○○○차장은 ○군이 ○○○○라고 자백했다고 발표했다」는 식으로 재전문(재재 아니 재재 재전문인지도 모른다)을 표현하는 스타일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더우기 B 군도 익명으로 하고 사진도 게재하지 않는다(무죄후에도). 피해자와 남편은 유족 및 본인의 양해가 있으면 실행보도가 가능하다.

<사례 12> 진실된 원인보도가 필요 탄광가스 누출사고-

사실개요

1981년 10월 16일 북해도 석장시의 북탄석장 탄광 해면 아래 810미터의 항도에서 약 60입방미터의 메탄가스가 누출하면서 항내화재까지 발생, 구호대원 10명을 비롯하여 항내에서 일하던 광부 93명이 사망하고 39명이 부상했다. 모든 유체의 수용을 끝낸 것은 5개월 후인 다음해 3월말이었다.

동광산은 1년전인 1980년에도 항내화재가 일어난 일이 있다. 그후 국가의 금융지원에 의해 재건도상에 있었기 때문에 아 사고에 의한 타격은 의외로 컸다. 사고 다음해인 1982년 10월 폐광과 동시에 전원 해고의 사태로까지 발전했다.

북탄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던 북해도경은 1983년 3월 30일 임천명 전사장, 소야사건 전상무 등 동사의 12명 (이 가운데 2명은 이 사고로 사망)을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혐의로 찰창지검에 서류송청했다. 「가스누출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선진보링결과의 적절한 해석을 태만히하여 가스를 빼는 보링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굴진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이 혐의내용이다. 또 경찰의 형사책임 추궁과는 별도로 사고희생자의 유족과 전종업원 등 모두 4,500명의 명의로 (책보고 47)원길태낭 회장등 회사간부를 살인죄등으로 찰창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륙 동지검은 1년 7개월후인 1984년 10월 5일 「가스누출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는 없었다」고 판시, 12명 전원에게 대해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사고현장이 수몰한 데다가 탄광의 가스누출의 메커니즘이 그때까지 해명되지 않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과실책임 입증의 큰 장벽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132명이나 되는 대양사상자를 내면서도 회사측에 대한 형사책임을 일체 추궁되지 않은 채 사고는 마무리 되었다.

보도내용

북해도경에 의한 서류송청의 단계에서 「충분한 가스빼기를 태만하다」, 「회사 전체의 과실」, 「보안경시의 체질에 메스」 등으로 실명보도했다.

「생존의 10명 전원 직함과 함께 실명」, 「사장, 상무, 탄광장의 3명만 직함과 함께 실명」, 사장, 상무, 탄광장, 3명만 직함이나 경칭없이 실명」, 「사장, 상무, 탄광장, 탄광차장의 4명만을 경칭없이 실명」으로 하는 등 각지의 실명취급은 다양했다. 얼굴사진은 임 전사장 뿐이었으며 게재하지 않은 신문도 있었다. 주소는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었다.

그 후 찰광지검이 12명 전원의 불기소처분을 발표했을 때에는 송청단계에서 「경칭없는 실명」으로 보도했던 신문도 「직함을 붙인 실명」으로 변하고 있었다.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실명으로 해야 할 사람 림 전사장, 소야사 상무, 그리고 유족, 사원들로부터 고발된 증원 회장 등 3명이다.

한 개의 사기업이라 하지만 사회적인 사명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활동에 수반하여 일어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의 눈」이 있으며 위법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법인으로서 그 기업책임을 추궁받게 된다.

개인차원에서는 기업내에 있어 회사를 대표하여 책임을 질 입장에 있는 사람은 대표권을 갖는 사장이며, 담당분야별로 있는 이사 이상의 임원이다. 보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실명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임원 이외의 일반사원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하고 싶다. 복탄사고의 경우 사고발생의 원인구명의 과정에서 중대한 관련성을 갖는 사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실명으로 할 수는 없다. 개인에 의한 고의의 「살인행위」라면 몰라도, 사고는 그 사람의 과실에 의해 일어난 것이며, 사회적으로 추궁관아야 할 사람은 그 사원이 속해 있는 분야의 담당임원, 회사를 대표하는 사장, 기업법인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복탄사고에서는 탄광장 이하의 사원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하든가 아니면 「림 전사장, 소야사 상무 등 12명」 등의 일괄표현으로 일반사원의 직명, 나이를 기술하지 않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탄광재해는 그 발생 자체가 돌발적이지만 그 원인, 배경에근 회사측의 일상적인 보안체제, 그것을 감시하는 입장에 있는 행정기관의 자세등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복탄사고에서도 회사측의 보안경시체질, 그러한 「복탄체질」을 만든 「추원체제」가 지적되었는데 더욱 더 심층(진상)을 파헤쳐 보도했어야만 했다. 경찰의 형사책임 추궁에 얽매이지 말고 광범위 한 취재활동으로 재발방지에 필요한 진실된 원인보도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